

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2차 본회의 (2019.1.21.)

조례안 심사 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목 차

1	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1
2	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3
3	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----	5

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. 1. 4.

나. 발 의 자 : 이홍희, 김향란, 박수자, 신재화, 이재운, 최정환,
표주숙, 김종두, 심재수, 권재경, 김태경 의원(11명)

다. 회부일자 : 2019. 1. 7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. 1. 18.

2. 개정이유

- 거창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변경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를 변경함.(제 3조 제2항 제2호)

- 기획예산담당관, 행정복지국, 보건소,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나.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를 변경함.(제 3조 제2항 제3호)

- 경제산업국, 농업기술센터, 수도사업소,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」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거창군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사무를 변경하는 것으로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9. 1. 4.
- 나. 발 의 자 : 이홍희, 김향란, 박수자, 신재화, 이재운, 최정환,
표주숙, 김종두, 심재수, 권재경, 김태경 의원(11명)
- 다. 회부일자 : 2019. 1. 7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. 1. 18.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을 반영하고,
-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월정수당 금액을 변경함.(안 제6조)
 - 2019년 1,798,910원
 -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: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
- 나. 여비지급 기준을 변경함.(안 제7조)
 -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금액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, 여비 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서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
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. 1. 4.

나. 발 의 자 : 이홍희, 김향란, 박수자, 신재화, 이재운, 최정환,
표주숙, 김종두, 심재수, 권재경, 김태경 의원(11명)

다. 회부일자 : 2019. 1. 7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. 1. 18.

2. 제안이유

○ 「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」 개정(시행일 2019.1.1.)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변경함(안 제2조)

- 보조기관중 국장·담당관·과장

-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본청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

4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「거창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 개정에 맞게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